

## 시 정부 청사 및 구역의 단성별 시설에 대한 행정명령

### 내용

행정명령 제16호는 모든 시 정부 부처에 시 공무원 및 공공 시설 직원들이 신분증, 의료 서류, 또는 기타 성별을 증명하거나 확인하는 양식을 제시하지 않고도 자신의 성정체성 또는 성별표현과 일치하는 시 정부 청사 및 구역의 단성별(single-sex) 시설(화장실, 락커룸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청했다. 뉴욕시 인권법은 2002년부터 성정체성이나 성별표현을 근거로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다.

본 행정명령에서는 시 정부 부처에 다음 사항을 요청하고 있다.

- 3개월 이내에 공무원 또는 공공 시설 직원들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신규 단성별 시설 정책 게시
- 관리자들의 경우 1년 이내에,接客 직원의 경우 2년 이내에 관련 내용 교육
- 3개월 이내에, 교육 요건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고용기회균등(EEO) 계획 수정
- EEO 보고 요건에 따라 시 행정서비스국(DCAS)에 현재의 행정 명령 준수를 위해 취한 단계 보고

행정 명령은 성정체성 또는 성별표현에 근거한 화장실 또는 기타 단성별 시설 이용을 거부당하는 것은 뉴욕 인권법에 위반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뉴욕 인권위원회에서 발행한 최근의 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것이다.

### 대상:

본 행정 명령은 뉴욕 시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건물 또는 구역을 이용하는 모든 이(시 공무원 및 공공 기관 직원 포함)에게 적용된다.

### 적용 장소:

본 행정 명령은 시청 산하 정부 부처 사무실, 시 소유의 공원, 수영장, 운동장, 특정 문화 시설 및 수련장 등을 포함한 뉴욕 시에서 소유 및 운영하는 모든 시설에 적용된다. 시 정부 부처는 새로 단일용 화장실이나 락커룸 시설을 짓거나, 기존의 화장실 또는 락커룸 시설에 새로운 표지판을 세울 필요는 없다.

### 이유:

트랜스젠더나 성별 관행을 따르지 않는 개인은, 특히 화장실이나 기타 단성별 시설 이용 시 학대나 폭력에 취약할 수 있다. 본 행정 명령에서는 뉴욕시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이나 공간의 단성별 시설을 트랜스젠더나 성별 관행을 따르지 않는 개인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의 다른 도시 및 주에서 트랜스젠더나 성별 관행을 따르지 않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 보호의 모범을 보이고자 한다.

### 방법:

뉴욕시 인권 위원회와 시 행정서비스국(DCAS)은 모든 시 정부 부처 및 기타 주체들과 협력하여 본 행정 명령을 준수할 예정이다.